

2022 기획세미나 <국제이주와 통합>

개요

- 주제 :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시티즌십: 사회적 포함과 배제
- 일시 : 2022. 4. 21. (목) 14:00-15:30
- 장소 : 비대면 Zoom 화상회의
- 연사 :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사회 : 문현아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 주최 :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 주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후원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Open Society Found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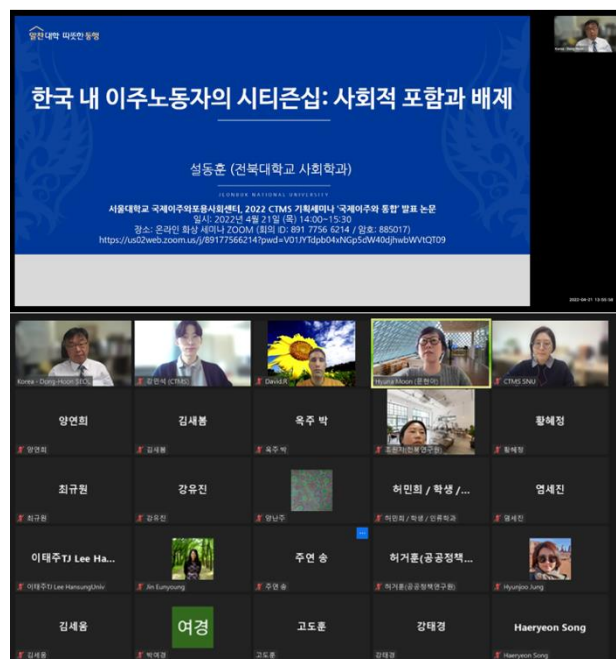
발표 및 자유토론 요약

이번 기획 세미나에서는 시티즌십의 학술적 용례, 정의, 근원을 20 세기 국민국가 이전부터 현대의 파편 사회까지 아울러 폭넓게 살펴본다. 또한 시티즌십의 논의를 확장하여 한국 내 이주 노동자의 시티즌십을 다룬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이주민들의 시티즌십과 이들의 위계화된 성원 자격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주민들을 포용했지만 외국인 혐오는 되려 심해진 양상을 보이는 파편 사회로서 한국사회를 살펴본다. 나아가 사회의 원자화, 대인 관계의 절단, 체계의 불균형, 아이덴티티의 위기, 사회 갈등 등으로 대표되는 파편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통합의 원리로서 시티즌십을 제안한다.

* * *

시티즌십(CITIZENSHIP)의 학술적 용례

시티즌십은 지위, 권리/책임/의무, 정치적 덕성, 집합 정체성, 그리고 공적 실천이라는 다섯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지위’의 맥락에서, 시티즌십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자격, 신분을 뜻한다. 이는 국적(Nationality)과 동의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성인 자유민 남성,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부르주아 계층이 시티즌십의 주체에 해당했다. 두번째로, “권리/책임/의무”의 맥락에서, 토마스 마샬(Thomas H. Marshall)은 시티즌십을 권리(civil rights)라는 뜻으로도 사용한다. 이처럼 시티즌십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에는 지위, 다른 면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브루베이커(Brubaker, 1989)는 형식적, 실질적 시티즌십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하며, 터너(Turner 1993)는 시티즌십의 형식적 측면, 내용적 측면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 밖에도 시티즌십은 정치적 덕성/시민성, 집합 정체성, 공적 실천의 3개 요소도 포함된다. 현상 기술을 위해선 지위, 권리의 요소만으로도 가능하나, 시티즌십 개념의 유용성을 고려하려면 나머지 3개 요소도 아울러 봐야 한다.

시티즌십이 무엇인가? 첫번째로, 시티즌십은 구성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인권·기본권과 명확하게 구분되며, 이 때 구성원과 비구성원의 구분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시티즌십을 갖는 구성원 내부는 평등하고 수평적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티즌십은 시민운동의 기본적인 가치로, 평등의 원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시티즌십은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배제의 속성을 동시에 갖는다. 마샬(Thomas H. Marshall) 이후 국민국가의 '시티즌십'은 평등의 원리에 바탕을 둔 사회통합의 기초원리가 되었다. 시티즌십 개념은 수평적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차별, 배제, 불평등은 그 자체로 시티즌십 기본원리에 어긋난다. 따라서 시티즌십은 통합을 지향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힘은 시티즌십에 있다. 그러나 국제이주의 확대로, 국민국가의 구성원이 국민=시민이라는 등식은 위협을 받게 되며, 국민이 아닌 비국민이 증가하였다.

한국 내 이주 노동자의 시티즌십 한국사회 내에서 이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체류 자격으로 구분해보자면, 첫째, 취업이 쉽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전문직 집단, 둘째,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비자 기한이 4년 이내로 제한되는 저숙련 노동자 집단, 셋째, 저숙련 노동자 중에서도 영주권 취득이 매우 어려운 방문취업제 혹은 재외 동포 집단, 마지막으로 적극적 포용정책의 대상이 되는 결혼이민자 집단이 있다. 한국 내 '국민국가 성원자격'의 위계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최하층에 자리한다. 야만적 폭력과 착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권리에는 아직도 제약이 많다. 특히 장기취업 외국인 노동자가 가족을 동반하여 한국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동반권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장기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가족생활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코로나 19 상황 외국인 주민의 시티즌십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국 내 이주민의 시티즌십을 '지위와 그에 수반된 권리'라고 이해했을 때,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을까?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위계화된 시티즌십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2020년 중앙정부에서 지급한 제 1차 재난지원금 사례의 경우, 외국인 중 극히 일부인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만이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F-6) 또는 영주권자(F-5)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없었고, 일반 신청이 아니라 복잡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이의 신청을 해야 했다. 이후 서울시에서 지급한 2020년 서울시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준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외국인 노동자는 지원하고 유학생(D-2)은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파편사회에서의 시티즌십 시티즌십을 논할 때, 구성원들 간 불평등, 차별, 서열화 등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특히, 시티즌십은 이주민에 대해 분화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주민에 대한 시티즌십이 어떤 면에서 수평적이며, 어떤 면에서 서열, 불평등, 차이가 용인되고 용인되지 않는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파편사회'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파편사회는 사회적 원자화, 대인관계의 절단, 체계의 불균형, 사회적 고립, 아이덴티티의 위기, 사회 갈등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사회적 파편화에 대한 대안으로 시티즌십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시티즌십이라는 맥락 하에 구성원들은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기에, 시티즌십을 파편 사회를 극복하는 사회 통합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 * *

자유토론 요약

Q: 고용허가제가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고용허가제에 대해 인권 중심적 시각에서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대해 외국의 학자들과 송출국의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국의 NGO 는 유독 저평가한다. 저평가하는 핵심적인 논거 중 하나가 사업장 이동 제한인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달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자체가 자국의 인력시장의 노동부족을 채우기 위해 받아들이는 시스템인데, 외국인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자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다. 이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특권의 배분 문제라고 생각한다.

Q: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시티즌십 관련하여,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더 확대될지 아니면 이를 강화하는 경향이 더 심해질지?

A: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 한국의 총인구 수는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12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이동이 제한되자 2020년부터는 외국인 인구까지 포함하는 상주 인구도 줄고 있다. 이른바 지방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 인구 재배치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경우,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인구의 개념 정의, 시티즌십의 정의 자체부터 다르게 해야 한다.

Q: 시티즌십의 의미와 개념 관련한 두가지 질문 1) 시티즌십의 여러 범주(지위, 권리, 정치적 덕성, 집합 정체성, 공적 실천) 관련, 법적 지위가 우선적으로 부여되어야 권리, 책임 등의 범주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주민의 시티즌십 확장을 논의할 때 법적 지위 부여를 우선적으로 두어야 할지 혹은 법적인 것 외 다른 정치·사회·문화적 단계가 있을지? 2) 시티즌십의 사회적 포함·배제 개념과 관련, 사회에서 배제·소외되거나 대표되지 못한 어떤 한 집단의 시티즌십 확장을 도모할 때, 이는 또 다시 다른 집단에 대한 배제의 기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A: (1 번 질문) 고용허가제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이런 경우 비자 체계를 바꾸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서류 미비 이주민의 경우, 지위, 권리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즉, (지위-권리의) 선후관계를 따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티즌십의 다섯가지 영역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 번 질문) 시티즌십의 포함과 배제 관련, 이주 노동자들 중 대졸자, 대학원 학력자, 본국 내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경우, 내국인 노동력 대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가는 리크루팅 이전부터 노동 이동의 기회를 제약한다. 인권이나 특권이나, 시민권이나 주권이나 문제의 쟁점인데, 권리 부여의 문제가 제로섬 관계에 놓이는 경우 쉽지 않다. 제로섬 관계가 있는 경우, 국가는 공공선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개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약을 푸는 정책을 한다.

그리고 CTMS 의 생각

누군가를 포함하려면 누구를 배제할 지, 선을 그어야 합니다. 국민국가의 시민권은 이동과 거주 자유로운 21 세기에 이르러 보편권이 아닌 특권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설동훈 교수의 이번 세미나는 비(非)국민을 배제하지 않는 이른바 ‘글로벌 시티즌십’을 실현할 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배제의 경계선’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나가야겠습니다.

정리: 이유림 인턴

감수: 강민석 연구원